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08

발의연월일: 2021. 1. 28.

발 의 자:김영식·곽상도·허은아

김희국 · 김석기 · 한무경

김용판・성일종・구자근

임이자 · 박 진 · 강민국

박성중 · 정희용 의위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하고,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 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.

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「부담금관리 기본

법」에 맞게 심사·검사·교육 및 평가 등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,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9조, 제25조, 제26조, 제28조 및제32조 등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이소속된 기관·단체의 장이 된다.

제26조제2호 중 "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" 를 "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,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 원본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중앙본부장"을 "중앙대책본부장" 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 본문 중 "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보센터를"을 "다음 각 호의 기관을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시·군·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"를 "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호의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"제3항에 따른 연합정보센터"를 "제3항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"를 "제3항 라이 따른 연합정보센터"를 "제3항 라이 따른 연합정보센터"를 한다.

- 1. 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합 정보센터
- 2.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
- 3.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 - ③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다. 이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제3항 중 "사항"을 "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"으로 한다. 제37조제1항 중 "5년마다"를 "매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전단 중 "제4항 후단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 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"지원 등에 필요한"을 "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"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2호 중 "제20조제1항"을 "제20조제1항, 제20조의2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37조제4항"을 "제37조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심사 ·검사·교육 및 평가 등을 받는 자(이하 "원자력관계사업자등"이라 한다)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 징수할 수 있다.

② 부담금의 규모,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

다.

-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의 규모, 산정기준,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45조의3(강제징수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
 -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 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49조제2호 중 "제37조제4항 전단·제5항 후단"을 "제37조제4항 전단·제6항 후단"으로 한다.

제50조제1호 중 "제37조제5항 전단"을 "제37조제6항 전단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57호 중 "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"을 "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"으로 한다.

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"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"을 "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	제19조(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
수립 등) ①·② (생 략)	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
	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방사능방
	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
	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25조(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	제25조(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
의 설치) ①・② (생 략)	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
	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
	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같은 조
	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
	책본부의 장의 권한을 행사하는
	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
	리가 되고, 중앙본부의 위원은
	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제
	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
	<u>· 단체의 장이 된다.</u>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	같음)
제26조(중앙본부장의 권한) 중앙	제26조(중앙본부장의 권한)
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	

- 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- 1. (생략)
- 2. 제32조에 따른 <u>방사능방호기</u> <u>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</u> 료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<u>중앙본부장</u>의 권한
- 4. (생략)
- 제28조(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의 설치) ①·② (생 략)
 - ③ 현장지휘센터에는 <u>방사능재</u> 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 보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 다 만,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<u>시·군·구 방사능방</u> 재대책본부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_</u>
1. (현행과 같음)
2 <u>방사능방호기</u>
술지원본부, 방사선비상의료
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
3
중앙대책본부
장
<u></u>
4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
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
호의 기관을
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
<u>호의</u>
1. 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
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
한 연합정보센터
2.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

<신 설>

-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와 제3항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등) ① · ②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략)

- ④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 부의 구성・운영 및 제3항에 따 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•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다.
- 제36조(방사능방재 교육) ①・② 제36조(방사능방재 교육) ①・② (생략)

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3.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 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 센터

(4) -------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 보센터,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----

- 제32조(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제32조(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 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 다. 이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 의 구성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 - ---- 제4항----

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 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 정에 필요한 <u>사항</u>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37조(방사능방재훈련) ① 원자 저 력안전위원회는 <u>5년마다</u>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・③ (생략)

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·도지 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, 원자력사업자는 제3 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 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 항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 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<신 설>

3
<u>사항과 제2항에 따</u>
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
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-
세37조(방사능방재훈련) ①
<u>' 11 C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4
/テ
<u>〈</u>
<u>단 삭제></u>

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

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·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,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9조(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저의 구축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·운영,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
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
있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
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
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
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<u>⑥</u>
<u>제5항</u>
¶39조(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
의 구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3
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

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(업무의 위탁) ① 원자력안 제 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연 구원,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 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, 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.

- 1. (생략)
- 2. 제9조제1항, <u>제20조제1항</u>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
- 3. (생략)
- 4. 제9조의3제2항 및 <u>제37조제4</u><u>항</u>에 따른 훈련 평가
- 5. 6. (생략)
-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

<u>관한</u>
에45조(업무의 위탁) ①
1. (현행과 같음)
2 <u>제20</u> 조제1항, 제20
조의2제3항
3. (현행과 같음)
4 <u>제37조제5</u>
<u> ই</u> }
5.・6. (현행과 같음)
<산 제>

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 른 심사·검사·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 략) <신 설>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5조의2(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
등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
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
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
따른 심사・검사・교육 및 평가
등을 받는 자(이하 "원자력관계
사업자등"이라 한다)에게 원자
력안전관리부담금(이하 "부담
금"이라 한다)을 부과・징수할
수 있다.

- ② 부담금의 규모,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 키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 의 규모, 산정기준, 납부방법 및

<신 설>

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9조(벌칙) 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

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

제45조의3(강제징수) ① 원자력안 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 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 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 수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 <u>한 때에는 10일 이</u>상 60일 이내 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 원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<u>,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1조, 제21조제1항제1호,	2
제37조제4항 전단・제5항 후	제37조제4항 전단・제6항 후
<u>단</u>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	<u>단</u>
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	
거짓으로 보고한 자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5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5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	
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1. 제4조제3항, 제12조제2항, <u>제</u>	1 <u>제3</u>
37조제5항 전단, 제38조제2항	7조제6항 전단
또는 제44조제1항·제3항에	
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	
업자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